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관리체계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48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위한 인증관리센터 설치·운영(안 제23조)

- 1)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증기관과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 지원, 안전조치 이행 점검 기술 지원, 인증 관련 기술 및 제도 연구, 인증 업무 지원 및 수수료 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인증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2) 인증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면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나.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방법 도입(안 제24조, 제25조)

- 1) 인증기관의 지정 관련 신청, 심사 및 지정 시 절차·방법을 정하고, 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 관련 적정한 기준을 정함.
- 2)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지정된 인증기관을 고시하여 누구나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검증기관 지정 등 준용 규정 마련(안 제26조)

검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인증기관을 준용하되, 검증기관이 따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는 별도로 정하고, 이상행위 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검증기준·절차와 검증방법 등 업무수행방법에 관해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규정 도입(안 제27조)

인증기관과 검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과 검증업무준칙의 신고 및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경우 재·개정된 인증업무준칙 또는 검증업무준칙을 다른 관련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도록 함.

마.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 마련(안 제28조)

인증기관 또는 검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인증업무와 검증업무 정지 시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그 처분을 고시·통지하도록 하여 가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함.

바.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 및 대응계획 등 준비(안 제30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및 검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가입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계획 및 조치를 정함.

사. 인증서의 폐지 절차·방법 규정(안 제31조)

인증기관은 인증서가 폐지될 경우 인증서 폐지목록 등 인증서 상태정보를 가입자나 인증관리센터,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서의 폐지로 인한 사고 위험 방지 및 인증업무 관리를 엄격히 할 수 있도록 함.

아. 과징금의 부과·징수 근거 마련(안 제32조, 제3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가입자의 이익이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여 인증기관이 동종의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기준과 부과 및 납부의 절차를 정함.

자.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안 제33조)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으로 인해 가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을 위해 준비해야 할 보험금 또는 공제금, 적립할 준비금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그 용도와 배상자력 유지를 위한 방법을 정함.

차.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안 제37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중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을 각각 “자율협력주행시스템”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을 “자율협력주행시스템”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을 “자율협력주행시스템”으로 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제35조 및 제36조로 하고,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업무 및 법 제29조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업무의 지원

2.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지원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의 점검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4.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기술개발·보급 및 표준화 연구에 관한 사업
5.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제도연구 및 국제협력의 지원
6.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지원 및 인증 수수료 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인증업무의 장애 예방과 복구 등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인증관리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③ 정부는 인증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한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와 내부규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율협력주행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임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2. 정관

3. 제2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계획서(별표 1 구분란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2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3.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율협력주행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5조(중전의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1항”을 “법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4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을 “자율협력주행시스템”으로 한다.

제25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26조(검증기관의 지정 및 검증업무 등)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 및 제25조(별표 1 구분란 제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또한, “인증기관”과 “제25조에 따른 지정기준”은 각각 “검증기관”과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으로 본다.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이상 유무를 탐지·판단할 수 있는 설비

2. 정보의 이상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설비

3. 그 밖에 검증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가입자가 자율협력주행 환경의 다른 가입자로부터 고장·결함·사이버공격 등에 기인한 이상(이하 “이상행위”)정보를 수신하였을 때 이를 탐지하는 기준

2. 가입자가 제1호에 따라 탐지한 이상행위 정보를 검증기관에 통지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기준

3. 검증기관이 제2호에 따라 가입자로부터 통지받은 이상행위 정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절차 및 기준

4. 그 밖의 이상행위 검증과 관련된 사항

④ 검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정보가 이상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인증서의 효력 정지·폐지 등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2. 이상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가입자에게 이상행위 내용 및 조치사항을 통지

3. 이상행위의 원인을 분석하여 자동차 또는 부품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

4. 그 밖의 이상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의 조치와 관련된 사항

⑤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세부적인 절차 및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7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 또는 자율협력주행 검증업무준칙(이하 “검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증업무준칙 또는 검증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4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증업무준칙 또는 검증업무준칙의 변경명령을 받은 인증기관 또는 검증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변경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제·개정된 인증업무준칙 또는 검증업무준칙을 즉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검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또는 검증업무의 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인증기관 또는 검증기관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지정취소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소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및 검증업무의 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해당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9조(시정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위반사실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33조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인증기관 또는 검증기관은 시정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대응계획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및 검증업무의 장애예방·대응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장애관리·대응 부서 및 담당자 지정, 매뉴얼 작성·시행 등 장애관리·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2. 교육·훈련 및 위험 탐지 등 장애 예방점검 활동 계획
3.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계획
4. 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 계약체결 및 유지(시설 및 장비의 유지

·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장애예방·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증기관의 장 및 검증기관의 장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애의 유형, 발생시점 및 원인

2. 접속경로 차단, 장애 사실의 전파 그밖에 장애대응을 위하여 기술 및 인력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

③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신속한 복구 또는 다른 시설 및 장비 등으로 신속한 대체

2. 인증관리센터, 다른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 등 관계기관에 장애사실의 즉시 통보

3. 인터넷 등을 통한 장애사실 및 그 복구사실 공표. 이 경우 특별한 사유로 장애(경미한 장애는 제외한다)가 예측될 경우에도 예상시간·사유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장애원인의 조사 및 재발방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에게 장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1조(인증서의 폐지 등) 인증기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인증서 폐지목록 등의 인증서 상태정보를 가입자나 인증관리센터, 다른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이 때, 인증서 폐지목록은 최장 1일을 주기로 갱신·공고한다.

제32조(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33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① 인증기관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준은 연간 총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관이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가입금액인 연간 총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보험, 공제 또는 준비금으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보충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고,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인증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

립하는 경우 책임이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금 관리 및
지급에 관한 내부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율협력주행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구분	지정기준
1. 기술능력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운용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력 12명 이상을 확보할 것 가.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출 것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 운영·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2. 재정능력	자본금 100억원 이상(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100억원 이상으로 한다)일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재정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시설 및 장비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가입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설비 나. 인증서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생성·발급·관리하기 위한 설비 다.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라. 그밖에 인증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별표 2]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 기준(제2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법 제32조 제1항제2호	지정취소		

한 경우				
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3호	지정취소		
라. 임원 중 법 제28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4호	지정취소		
마. 인증기관 지정 3개월 이후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계속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5호	업무 정지 3개월	지정취소	
바.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6호	경고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7호	업무 정지 3개월	지정취소	
아. 인증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8호	지정취소		

[별표 3]

위반행위별 과징금 금액(제32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징금 금액
1. 인증기관 또는 검증기관 지정 3개월 이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계속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5호	1천만원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6호	5백만원
3.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7호	
가. 법 제33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1천만원
나. 법 제33조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5백만원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3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단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2호에 따라 효력이 소멸되는 인증서에 관한 정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 제1항제1호	250	350	500
나. 법 제34조제3항(법 제29조제2항에서 준	법 제44조 제1항제2호	250	350	500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 법 제35조제1항(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 제1항제3호	250	350	500
라. 법 제35조제4항(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 제1항제4호	250	350	500
마.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 제1항제5호	250	350	5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 조사) ① (생략) ② 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u>자율주행협력시스템</u> 등의 연구개발·운영 및 활용 현황 3. (생략) 4. <u>자율주행협력시스템</u> 및 정밀도로지도, 도로의 구축 현황 등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 현황 5. (생략)	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u>자율협력주행시스템</u> ----- ----- 3. (현행과 같음) 4. <u>자율협력주행시스템</u> ----- ----- ----- -- 5. (현행과 같음)
제17조(<u>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u>)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u>자율주행협력시스템</u> 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이하 “자율주행 안전구간”이라 한다) 및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17조(<u>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u>) ----- ----- <u>자율협력주행시스템</u> ----- ----- ----- ----- ----- -----.
제18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① (생략)	제18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도로표지, 신호기, 안전표지, 자율주행협력시스템,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도로부속물이 설치·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

③ (생략)

<신 설>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자율협력주행시스템-----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업무 및 법 제29조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업무의 지원
2.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지원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의 점검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4.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기술개발·보급 및 표준화 연구에 관한 사업

5.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제도연구 및 국제협력의 지원

6.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지원 및 인증 수수료 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인증업무의 장애 예방과 복구 등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인증관리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③ 정부는 인증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한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와 내부 규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

<신 설>

시한다.

제24조(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율협력주행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임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2. 정관

3. 제2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계획서(별표 1 구분란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

다.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2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3.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율협력주행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26조(검증기관의 지정 및 검증 업무 등)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 및 제25조(별표 1 구분란 제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또한, “인증기관”과 “제25조에 따른 지정기준”은 각각 “검증기관”과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으로 본다.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

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이상 유무를 탐지·판단할 수 있는 설비

2. 정보의 이상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설비

3. 그 밖에 검증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가입자가 자율협력주행 환경의 다른 가입자로부터 고장·결합·사이버공격 등에 기인한 이상(이하 “이상행위”)정보를 수신하였을 때 이를 탐지하는 기준

2. 가입자가 제1호에 따라 탐지한 이상행위 정보를 검증기관에 통지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기준

3. 검증기관이 제2호에 따라 가

입자로부터 통지받은 이상행위 정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절차 및 기준

4. 그 밖의 이상행위 검증과 관련된 사항

④ 검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정보가 이상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인증서의 효력 정지·폐지 등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2. 이상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가입자에게 이상행위 내용 및 조치사항을 통지

3. 이상행위의 원인을 분석하여 자동차 또는 부품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

4. 그 밖의 이상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의 조치와 관련된 사항

⑤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세부적인 절차 및 내용은 국

<신 설>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7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 또는 자율협력주행 검증업무준칙(이하 “검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증업무준칙 또는 검증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4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증업무준칙 또는 검증업무준칙의 변경명령을 받은 인증기관 또는 검증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변경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은 법

<신 설>

제31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제·개정된 인증업무준칙 또는 검증업무준칙을 즉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검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또는 검증업무의 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인증기관 또는 검증기관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지정취소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취소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및 검증업무의 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해당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에게 서면으

<신 설>

<신 설>

로 알려야 한다.

제29조(시정명령)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 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위반사실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33조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인증기관 또는 검증기관은 시정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대응계획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및 검증업무의 장애예방·대응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장애관리·대응 부서 및 담당자 지정, 매뉴얼 작성·시행 등 장애관리·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2. 교육·훈련 및 위험 탐지 등 장애 예방점검 활동 계획
3.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계획

4. 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
계약체결 및 유지(시설 및 장
비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
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장애예방·대응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증기관의 장 및 검증기관
의 장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애의 유형, 발생시점 및 원
인

2. 접속경로 차단, 장애 사실의
전파 그밖에 장애대응을 위하
여 기술 및 인력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

③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은 장
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신속한
복구 또는 다른 시설 및 장비
등으로 신속한 대체

2. 인증관리센터, 다른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 등 관계기관에
장애사실의 즉시 통보

3. 인터넷 등을 통한 장애사실

<신 설>

및 그 복구사실 공표. 이 경우 특별한 사유로 장애(경미한 장애는 제외한다)가 예측될 경우에도 예상시간·사유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장애원인의 조사 및 재발방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에게 장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1조(인증서의 폐지 등) 인증기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인증서 폐지목록 등의 인증서 상태정보를 가입자나 인증관리센터, 다른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이 때, 인증서 폐지목록은 최장 1일을 주기로 갱신·공고한

<신 설>

다.

제32조(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

<신 설>

<신 설>

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33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 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①

인증기관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준은 연간 총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관이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가입금액인 연간 총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보험, 공제 또는 준비금으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보충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고,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 된다.

④ 인증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책임이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금 관리 및 지급에 관한 내부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u>제23조</u>(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u>법 제27조제1항</u>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u>법 제27조제2항</u>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법 제21조에 따른 <u>자율주행 협력시스템</u>의 구축·운영 ③ (생략) <u>제24조</u> (생략) <u><신설></u>	<u>제35조</u>(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 <u>법 제41조제1항</u>----- -----. 1. ~ 3. (현행과 같음) ② ----- <u>법 제41조제2항</u>----- -----. 1. · 2. (현행과 같음) 3. ----- <u>자율협력주행시스템</u>----- ③ (현행과 같음) <u>제36조</u> (현행 제24조와 같음) <u>제37조</u>(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연 락 처	(044) 201 - 3934